

## 2022년 제2차 이사회 회의결과

- 일 시 : 2022. 4. 27.(금) 14:30~16:30
- 장 소 : 서울 이스트센트럴타워 1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17명
  - 회 장 : 임대기
  - 부 회 장 : 최경열, 백옥자, 최경용, 윤여춘, 김동주, 김정봉
  - 전무이사 : 최인해
  - 이 사 : 김승일, 문봉기, 이은자, 황영조, 김재용, 이진택, 강조한, 김방출
  - 감 사 : 전용환

- 성원보고 및 개식통고 : 사회자

- 개회선언 : 임대기 회장

재적이사 28명중 이사 16명 참석으로 성원됨.

- 인사말 : 임대기 회장

오랜만에 뵙습니다.

현재 외부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경제상황, 그리고 최근 중국의 '상하이-베이징 봉쇄'까지 대외적인 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육상과 직접 관계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마라톤 대회를 비롯하여 국내 대회들이 속속 개최되고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이사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원만하게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작년 도쿄올림픽 당시에 우리 이상혁 선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육상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상혁 선수가 금년 2월에 한국신기록도

수립하였고 세계실내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도 획득하면서 우리 육상이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는 종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수영이라든지 빙상이라든지 스포츠 스타들이 나오으로써 해당 종목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좋은 선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육상도 1992년도에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과 같이 최근에 우리 육상이 국민들의 관심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이러한 좋은 분위기를 이어서 올해 7월에 있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9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육상이 국민들 마음 속에 아직은 크게 자리하지 못하고 있고 세계적인 수준에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 이를 단 시간에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맹에서는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시작하여 조기에 성과를 거두고 있고 수익사업을 위해서 후원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종식이 가까워졌다고 보고, 그동안 계획했던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육상 붐 조성을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육상교육훈련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우리 미래 경쟁력 제고에도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할 것입니다.

우리 육상이라는 거대한 종목을 움직이기 위해서 단 시간에 조급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쌓아 나가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9월에 있을 큰 국제 대회에 대한 선수 선발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선발된 선수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간다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건강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뒤 쪽으로 보시면 변경된 로고 디자인들이 게시되어 있습

니다. 1945년도에 본 연맹 창립 이래로 써오던 로고를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고 변경된 사항을 올해 5월부터 선수들의 유니폼이나 운동장의 펜스 광고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로고 변경 사항은 큰 틀에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의견을 주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맹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여러 안건들이 심의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 계신 이사 분들의 의견을 많이 전해주시면 이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인사말은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건심의

### [보고안건]

#### ◆ 제 1 호 : 전차 이사회 회의결과 보고

사회자로부터 [전차 이사회 회의결과]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이사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접수함.

#### ◆ 제 2 호 : 연맹 로고디자인 개발완료 보고의 건

사회자로부터 [연맹 로고디자인 개발완료 사항]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이사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접수함.

### [의결안건]

#### ◆ 제 1 호 : 규정개정의 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사회자로부터 [규정개정 사항(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이사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의결사항 : 내용 첨부 (별첨1)

#### ◆ 제 2 호 :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파견선수 선발의 건

사회자로부터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파견선수 선발]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원안을 토대로 추후 재심의·의결하고자 함.

- 의결사항 (요약)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파견선수 선발과 관련하여 최인해 전무이사와 이진택 이사를 필두로 **선발명단 재검토(보완)**하여 이사회에 서면보고 진행.

◆ 제 3 호 : 국가대표 지도자(경보) 선발의 건

사회자로부터 [국가대표 지도자(경보) 선발]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이사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제 4 호 : 본 연맹 공인료 시도연맹 지원의 건

사회자로부터 [본 연맹 공인료 시도연맹 지원]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이사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의결사항 (요약)

공인료(경기장 및 로드레이스 코스)의 지원 비율을 **30%**로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  
(현행 20%)

◆ 제 5 호 : 대한육상연맹 경기력향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사회자로부터 [대한육상연맹 경기력향상금 지급규정 변경]에 대한 유인물 요약 보고 후 참석 이사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의결사항 : 내용 첨부 (별첨2)

◆ 마무리 말씀 : 임대기 회장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번 이사회가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개최될 큰 대회들과 파리 올림픽까지 갈 길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산 회 16:30

기록 : 김상우 대리

**스포츠공정위원회 정관 개정(안)**

체육회 지침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22.1.21. 현행)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b>제1장 총칙</b>	<b>제1장 총 칙</b>	<b>제1장 총칙</b>
<p><b>제2조(적용)</b>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li> <li>2. <u>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u>(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li> <li>3. <u>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직원은 포상 관련 조항에만 적용된다)</u></li> <li>4. <u>대회기간 한시적으로 그 대회의 임원의 지위를 갖는 사람</u></li> <li>5. 체육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u>체육동호인</u>·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 회원과 <u>운동경기부</u> 등 단체</li> </ol>	<p><b>제2조(적용)</b>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 연맹</li> <li>2. 전국연맹체, 시·도연맹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u>시도</u> 관계단체"라 한다)</li> <li>3. 본연맹의 임원 및 본 연맹 관계단체의 임·직원(<u>직원은 포상 관계단체의 임·직원</u>)</li> <li>4. <u>대회 주최 및 참가 임원</u></li> <li>5. 본 연맹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u>체육동호인</u>·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 회원과 <u>운동부</u> 등 단체</li> </ol>	<p><b>제2조(적용)</b>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 연맹</li> <li>2. 전국연맹체, 시·도연맹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u>시도연맹</u> 관계단체"라 한다)</li> <li>3. 본 연맹의 임원 및 본 연맹 관계단체의 임·직원(<u>직원은 포상 관련조항에만 적용된다</u>)</li> <li>4. <u>대회기간 한시적으로 그 대회의 임원의 지위를 갖는 사람</u></li> <li>5. 본 연맹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u>체육동호인</u>·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 회원과 <u>운동경기부</u> 등 단체</li> </ol>
<p><b>제3조(기능)</b>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관 제43조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 "현행과 같음"</li> <li>4. <u>대한체육회 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u>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li> <li>5. "현행과 같음"</li> <li>6. 체육회의 임원과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원 및 <u>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u> 등록된 지도자·선수·<u>체육동호인</u>·심판·선수관리담당자·<u>운동경기부</u>의 징계에 관한 사항</li> <li>7. "현행과 같음"</li> <li>8.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u>회원시·도체육회</u>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이하 "임원심의"라 한다) 및 <u>회원시·도체육회</u>의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li> <li>9~10. "현행과 같음"</li> </ol>	<p><b>제3조(기능)</b> 위원회는 정관 제38조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 "생략"</li> <li>4. 연맹의 대상자추천에 관한 사항</li> <li>5. "생략"</li> <li>6. 연맹의 임원과 시도연맹 관계단체의 임원 및 <u>그 단체에</u> 등록된 지도자·선수·<u>체육동호인</u>·심판·선수관리담당자·<u>운동부의</u> 징계에 관한 사항</li> <li>7~10. "생략"</li> </ol>	<p><b>제3조(기능)</b> 위원회는 정관 제38조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 "현행과 같음"</li> <li>4. 연맹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li> <li>5. "현행과 같음"</li> <li>6. 연맹의 임원과 시도연맹 관계단체의 임원 및 <u>그 단체에</u> <u>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u> 등록된 지도자·선수·<u>체육동호인</u>·심판·선수관리담당자·<u>운동경기부</u>의 징계에 관한 사항</li> <li>7~10. "생략" "현행과 같음"</li> </ol>

체육회 지침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22.1.21. 현행)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p><b>제4조(구성)</b></p> <p>① 위원회는 다음 <u>각 호의</u> 위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장 1명</li> <li>2. 부위원장 3명 이하</li> <li>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li> </ol> <p>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u>대한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u>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이 회장에게 위임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가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li>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li> <li>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4.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ol> <p>④ 정관 제43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p> <p>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u>특정 성별의 비율이</u> 재적 위원수의 <u>70%를 초과하지 않도록</u> 노력하여야 한다.</p> <p>⑥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4조(구성)</b></p> <p>① 위원회는 다음 <u>의 위원</u>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장 1명</li> <li>2. 부위원장 1명</li> <li>3.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li> </ol> <p>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u>회장이</u> 연맹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대한체육회장과 협의하여 <u>회장이 위촉한다.</u></p> <p>1~3. "생략"</p> <p>④ 정관 <u>제26조제1항</u>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p> <p>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u>여성이</u> 재적 위원수의 <u>20% 이상</u>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⑥ "생략"</p>	<p><b>제4조(구성)</b></p> <p>① 위원회는 다음 <u>의 위원 각 호</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장 1명</li> <li>2. 부위원장 1명</li> <li>3.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li> </ol> <p>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u>연맹 회장 (이하 "회장"이라 한다)</u>이 연맹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대한체육회장과 협의하여 <u>회장이 위촉한다.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이 회장에게 위임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 과반수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u></p> <p>1~3. "현행과 같음"</p> <p>④ 정관 <u>제26조제1항제38조3항 및 제39조1항</u>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p> <p>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u>여성아특정 성별의 비율이</u> 재적 위원수의 <u>20% 이상 포함되도록70%를 초과하지 않도록</u> 노력하여야 한다.</p> <p>⑥ "현행과 같음"</p>

체육회 지침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22.1.21. 현행)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p>제5조(위원의 직무)</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u>이때 위원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u></p>	<p>제5조(위원의 직무)</p> <p>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제5조(위원의 직무)</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u>이때 위원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u></p>
<p>제6조(임기)</p> <p>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u>이 경우</u> 임기 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p> <p>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u>임기의 남은</u> 기간으로 한다.</p>	<p>제6조(임기)</p> <p>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u>한다.</u></p> <p>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u>의 잔여기간</u>으로 한다.</p>	<p>제6조(임기)</p> <p>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u>한다.하며, 임기 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u></p> <p>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u>의 잔여임기의 남은</u> 기간으로 한다.</p>
<p>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li> <li>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li> <li>3.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li> <li>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5.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li> <li>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li> </ol>	<p>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li> <li>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li> </ol> <p>&lt;신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li> <li>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li> </ol>	<p>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li> <li>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li> </ol> <p>3. <u>제11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5.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li> <li>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li> </ol>
<p>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p>	<p>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p>

체육회 지침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22.1.21. 현행)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한다.		한다.
제12조(심의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2호 및 제1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회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심의는 체육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유권해석에 관하여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체육회의 최종 결정이다.	제12조(심의대상) ①~② "생략" <신설>	제12조(심의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2호 및 제1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연맹 제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심의는 연맹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유권해석에 관하여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연맹의 최종 결정이다.
<b>제15조(체육회 표창의 구분)</b> ① 체육회의 표창권자는 회장으로 한다. ② 체육회 표창은 체육상, 창립 기념 표창 등이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창립기념 표창은 매년 창립 기념일에 실시하며 전문체육, 학교체육, 생활체육 진흥에 공헌한 사람,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u>회원</u>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u>임직원</u> 으로 성실히 직무를 하고 (이하 생략) 1~4. "현행과 같음" 5~6 "현행과 같음"	<b>제15조(연맹 표창의 구분)</b> ①~⑥ "생략"	<b>제15조(연맹 표창의 구분)</b> ①~⑥ "현행과 같음"
제16조(포상절차) ① 정부 포상은 회원종목단체의 장, <u>회원</u> 시·도체육회의 장이 <u>각각</u>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요청기관에 추천한다. (이하 생략) ② 체육상은 회원종목단체의 장, <u>회원</u> 시·도체육회의 장, 체육회가 지정한 체육유관단체의 장이 <u>각각</u>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며, 그 외의 체육회 표창은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③~⑤ "현행과 같음"	제16조(포상절차) ① 정부 포상은 연맹 및 시·도연맹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요청기관에 추천한다. 다만, 정부의 요청으로 긴급한 경우 연맹 및 시도연맹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⑤ "현행과 같음"	제16조(포상절차) ① 정부 포상은 연맹 및 시·도연맹의 장이 <u>각각</u>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요청기관에 추천한다. 다만, 정부의 요청으로 긴급한 경우 연맹 및 시도연맹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심의대상) 위원회는 정관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임원심을 심의의결한다. 1. "현행과 같음" 2. 회원종목단체 임원 및 회장 후보자, <u>회원</u> 시·도체육회 임	제17조(심의대상) "생략"	제17조(심의대상) "현행과 같음"



체육회 지침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22.1.21. 현행)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p>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및 회장후보자</p> <p>3. <b>회원</b>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대상자</p>		
<p><b>제18조(심의절차)</b></p> <p>① 이사(<b>체육회</b>의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사무총장 및 선수대표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b>스포츠공정위원회</b>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② 임원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선임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b>각 단체의</b>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20조에 <b>따라</b>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회원종목단체 및 <b>회원</b>시·도체육회를 거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3. "현행과 같음"</p> <p>⑤ 위원회는 임원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회원종목단체 및 <b>회원</b>시·도체육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p>	<p><b>제18조(심의절차)</b></p> <p>① 이사(<b>대한육상연맹</b>의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및 선수대표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b>스포츠공정위원회</b>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② 임원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선임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20조에 <b>의거한</b>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p> <p>③~⑤ "생략"</p>	<p><b>제18조(심의절차)</b></p> <p>① 이사(<b>대한육상연맹</b>의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및 선수대표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b>스포츠공정위원회</b>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② 임원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선임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b>각 단체의</b>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20조에 <b>의거한</b> <b>따라</b>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p> <p>③~⑤ "현행과 같음"</p>
<p><b>제20조(재심의요구)</b></p> <p>① 제19조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회원종목단체 또는 <b>회원</b>시·도체육회를 거쳐 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재심의신청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원종목단체 또는 <b>회원</b>시·도체육회를 거쳐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20조(재심의요구)</b></p> <p>①~③ "생략"</p>	<p><b>제20조(재심의요구)</b></p> <p>①~③ "현행과 같음"</p>

체육회 지침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22.1.21. 현행)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 의무) 회원종목단체 및 <u>회원</u> 시·도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8조와 <u>회원</u> 시·도체육회 규정 제38조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스포츠공정위원회의 설치 의무) “생략”	제22조(스포츠공정위원회의 설치 의무) “현행과 같음”
제23조(징계의 원칙) 징계 혐의 성립과 결정은 행위시의 규정에 의하며, 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회원종목단체 또는 회원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제23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본 연맹 또는 시·도육상연맹 및 전국연맹체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연맹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제23조(증거우선징계의 원칙) 징계 혐의 성립과 결정은 행위시의 규정에 의하며, 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본 연맹 또는 시·도육상연맹 및 전국연맹체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연맹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더라도 제31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연맹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더라도 제31조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연맹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더라도 제31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u>횡령·배임</u> , 회계부정, <u>권한남용</u> ,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u>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u> , 불법도박 6. 체육인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u>7의2. 인권 침해, 괴롭힘</u> <u>7의3. 선거 관련 비위행위</u> 8. 기타 제1호부터 <u>제7호의3</u>	제25조(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u>횡령 배임</u> , 회계부정, <u>직권 남용</u> ,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u>음주소란 행위(강화 훈련 기간중)</u> , 불법도박 6.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8. 기타 제1호부터 <u>제7호까지</u>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u>횡령·배임</u> , 회계부정, <u>권한남용</u> ,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u>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u> , 불법도박 6.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u>7의2. 인권 침해, 괴롭힘</u> <u>7의3. 선거 관련 비위행위</u> 8. 기타 제1호부터 <u>제7호의3</u>

체육회 지침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22.1.21. 현행)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p><u>까지에</u> 준하는 사건</p> <p>②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0조제4항 및 <u>회원</u>시·도체육회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임원, <u>회원</u>시·도체육회 임원 및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p> <p>③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u>회원</u>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 또는 <u>소속</u>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p> <p>④ 제28조제2항과 제34조제6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p> <p>⑤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u>회원</u>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하여야 한다.</p> <p><u>⑥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해당 시·도종목단체 위원회가 관할하되, 시·도종목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li> <li>2. 회원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li> </ol> <p><u>⑦ 경기인 등록 규정 제2조제11호의 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부 징계사건은 시·도위원회에서 관할을 정하여 처리하되, 관할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사</u></p>	<p><u>의</u> 규정에 준하는 사건</p> <p>② 본 연맹정관 제20조 제4항 따라 연맹 임원, 시·도연맹 임원 및 시·도 연맹 회원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p> <p>③ 연맹, 시·도연맹 및 시·도연맹의 회원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 또는 <u>해당</u>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p> <p>④~⑤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u>까지에</u> 규정에 준하는 사건</p> <p>② 본 연맹정관 제20조 제4항 따라 연맹 임원, 시·도연맹 임원 및 시·도연맹회원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p> <p>③ 연맹, 시·도연맹 및 시·도연맹의 회원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 또는 <u>해당소속</u>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u>⑥ 시·도연맹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해당 시·도위원회가 관할하되, 시·도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 연맹 위원회가 시·도연맹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 연맹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li> <li>2. 본 연맹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li> </ol> <p><u>⑦ 경기인 등록 규정 제2조제11호의 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부 징계사건은 시·도위원회에서 관할을 정하여 처리하되, 관할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 연맹 위원회가 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사건을 직접 처리한다.</u></p>

체육회 지침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22.1.21. 현행)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p><u>건을 직접 처리한다.</u></p> <p>1. <u>회원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u></p> <p>2. <u>국가대표 선수(후보선수 포함) 및 지도자의 경우 국가대표 지위와 관련한 비위 사건</u></p>		<p>1. <u>본 연맹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u></p> <p>2. <u>국가대표 선수(후보선수 포함) 및 지도자의 경우 국가대표 지위와 관련한 비위 사건</u></p>
<p><b>제2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b></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징계 관할로 결정된 해당 단체는 처분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 미구성 등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할 재심의기관(<u>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u>)의 경우 <u>대한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구체육회</u>의 경우 <u>회원시·도체육회</u>)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해당 기관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관할을 다시 결정한다.</p>	<p><b>제2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b></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징계 관할로 결정된 해당 단체는 처분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 미구성 등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할 재심의기관(<u>회원종목단체</u>)의 경우 <u>대한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구체육회</u>의 경우 <u>시·도체육회</u>)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해당 기관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관할을 다시 결정한다.</p>	<p><b>제2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b></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징계 관할로 결정된 해당 단체는 처분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 미구성 등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할 재심의기관(<u>회원종목단체본 연맹</u>)의 경우 <u>대한체육회, 시·도종목단체연맹, 시·군·구체육회</u>의 경우 <u>회원시·도체육회</u>)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해당 기관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관할을 다시 결정한다.</p>
<p><b>제27조(징계종류)</b></p> <p>① <u>징계의 종류는 그 대상별로 다음과 같다.</u></p> <p>1. <u>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관리담당자만을 말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u></p> <p>2. <u>선수 : 견책,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u></p> <p>3. <u>심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u></p> <p>4. <u>단체 임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자격정지, 해임, 제명</u></p> <p>5. <u>운동경기부(학교운동부 또</u></p>	<p><b>제27조(징계종류)</b></p> <p>① <u>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u></p> <p>1. <u>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u></p> <p>2. <u>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만을 말한다)</u></p>	<p><b>제27조(징계종류)</b></p> <p>① <u>징계의 종류는 그 대상별로 다음과 같다.</u></p> <p>1. <u>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관리담당자만을 말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u></p> <p>2. <u>선수 : 견책,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u></p> <p>3. <u>심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u></p> <p>4. <u>단체 임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자격정지, 해임, 제명</u></p> <p>5. <u>운동경기부(학교운동부 또</u></p>

체육회 지침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22.1.21. 현행)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p><u>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u>) : 출전정지 ②~⑥ 삭제</p>	<p>②~⑥ “생략”</p>	<p><u>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u>) : 출전정지 ②~⑥ 삭제</p>
<p><b>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b>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u>및 정도</u>, 과실의 경중과 <u>평소의 행실</u>, 공적(功績), 적극행정, <u>뇌우치는 정도 또는</u>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다. ②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u>및 제7호의 2부터 제8호</u>(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u>규정</u>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7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④ 위원회는 혐의자가 징계기간 내 동일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2배 이상으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에 해당하는 징계 기간 또는 액수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각 혐의에 대하여 합산한 징계의 기간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p>	<p><b>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b>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u>비위의 정도 및</u> 과실의 경중과 <u>평소의 행실</u>, 공적(功績), 적극행정, <u>뇌우치는 정도 또는</u> 그 밖의 정상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다. ②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u>규정</u>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7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lt;신설&gt; &lt;신설&gt;</p>	<p><b>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b>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u>및 정도</u>, <u>비위의 정도 및</u> 과실의 경중과 <u>평소의 행실</u>, 공적(功績), 적극행정, <u>뇌우치는 정도 또는</u>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다. ②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u>및 제7호의 2부터 제8호</u>(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u>규정</u>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연맹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7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④ 위원회는 혐의자가 징계기간 내 동일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2배 이상으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에 해당하는 징계 기간 또는 액수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각 혐의에 대하여 합산한 징계의 기간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p>
<p><b>제32조(징계의 감경 등)</b> ①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 아래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u>별표4에 따라 감경</u>하거나 사면, 복권할 수 있다. 단, 징계를 확정할 당시 이미 제4항의 사유를 적용한 경우에는 다시 감경하거나 사면, 복권할 수 없다.</p>	<p><b>제32조(징계의 감경등)</b> ①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 아래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u>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u>, 사면, 복권, 또는 해제할 수 있다.</p>	<p><b>제32조(징계의 감경등)</b> ①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 아래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u>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u>,<u>별표4에 따라 감경</u>하거나 사면, 복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단, 징계를 확정할 당시 이미 제4항의 사유를 적용한 경우에는 다시 감경하거나 사면,</p>

체육회 지침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22.1.21. 현행)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p>1. 삭제</p> <p>2. 삭제</p> <p>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u>인하여 이미 발생한</u>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p> <p>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u>실효된 것으로 하며,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징계를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징계를 감경,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다.</u></p> <p>④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등을 할 수 있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u>회장의</u> 표창을 받은 공적</p> <p>⑤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p> <p>1~4. "현행과 같음"</p> <p>⑥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회원종목단체, <u>회원</u>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가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p> <p>⑦ "현행과 같음"</p>	<p>1. "생략"</p> <p>2. "생략"</p> <p>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u>인한 기성의</u>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p> <p>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u>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u></p> <p>④ 위원회에서 <u>의결한 징계는 연맹, 시·도연맹 및 시·도연맹 종목단체에서</u> 감경 등을 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대한체육회 회장 및 대한육상연맹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p> <p>⑤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p> <p>1~4. "생략"</p> <p>⑥~⑦ "생략"</p>	<p><u>복권할 수 없다.</u></p> <p>1. 삭제</p> <p>2. 삭제</p> <p>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u>인한 기성의인하여 이미 발생한</u>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p> <p>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u>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 실효된 것으로 하며,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징계를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징계를 감경,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다.</u></p> <p>④ 위원회에서 <u>의결한 징계는 연맹, 시·도연맹 및 시·도연맹 종목단체에서</u>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등을 할 수 있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대한체육회 회장 및 대한육상연맹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p> <p>⑤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p> <p>1~4. "현행과 같음"</p> <p>⑥~⑦ "현행과 같음"</p>
<p>제33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p> <p>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체육회는 <u>확정된 징계에 대하여</u>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 징계혐의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u>회원</u>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및 피해자(선수 권익침해 경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u>제31조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 등</u>)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1차</p>	<p>제33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p> <p>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연맹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 징계혐의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및 피해자(선수 권익침해 경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p> <p>단,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을</p>	<p>제33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p> <p>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연맹은 <u>확정된 징계에 대하여</u>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 징계혐의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u>회원</u>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및 피해자(선수 권익침해 경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u>제31조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 등</u>)를 명시하여야 한다.</p>



체육회 지침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22.1.21. 현행)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로 결정한 징계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단,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p><b>제34조(재심의 신청 등)</b></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u>다만, 1차 징계사항에 대하여 징계혐의자만 재심을 신청한 경우는 가중할 수 없고, 피해자만 재심을 신청한 경우는 감면할 수 없다.</u></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u>징계혐의자의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의를 결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의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는 1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u></p> <p>⑦ "현행과 같음"</p>	<p><b>제34조(재심의신청 등)</b></p> <p>①~③ "생략"</p> <p>④ 연맹위원회 또는 시·도연맹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⑥ 위원회는 연맹위원회 및 시·도연맹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u>징계혐의자의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 결정할 수 있다.</u></p> <p>⑦ "생략"</p>	<p><b>제34조(재심의신청 등)</b></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연맹위원회 또는 시·도연맹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u>다만, 1차 징계사항에 대하여 징계혐의자만 재심을 신청한 경우는 가중할 수 없고, 피해자만 재심을 신청한 경우는 감면할 수 없다.</u></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위원회는 연맹위원회 및 시·도연맹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u>징계혐의자의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 결정할 수 있다.의를 결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의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는 1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u></p> <p>⑦ "현행과 같음"</p>
<p><b>제35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b></p> <p>①~⑥ "현행과 같음"</p> <p>⑦ 동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대회 중 <u>스포츠공정위원회</u> 소집이 어려울 경우, 대회 주관 단체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시 위원회 구성 요건은 <u>스포츠공정위원회</u>의 구성요건과 달리할 수 있다.</p> <p>⑧ "현행과 같음"</p> <p>⑨ 임시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해당 단체 <u>스포츠공정위원회</u>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p>	<p><b>제35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절차)</b></p> <p>①~⑥ "생략"</p> <p>⑦ 동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대회 중 <u>스포츠공정위원회</u> 소집이 어려울 경우, 대회 주관 단체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시 위원회 구성 요건은 <u>스포츠공정위원회</u>의 구성요건과 달리할 수 있다.</p> <p>⑧ "생략"</p> <p>⑨ 임시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해당 단체 <u>스포츠공정위원회</u>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p>	<p><b>제35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절차)</b></p> <p>①~⑥ "현행과 같음"</p> <p>⑦ 동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대회 중 <u>스포츠공정위원회</u> 소집이 어려울 경우, 대회 주관 단체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시 위원회 구성 요건은 <u>스포츠공정위원회</u>의 구성요건과 달리할 수 있다.</p> <p>⑧ "생략"</p> <p>⑨ 임시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해당 단체 <u>스포츠공정위원회</u>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p>

체육회 지침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22.1.21. 현행)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b>제36조(징계의 효력 등)</b> ① <u>위원회</u> ,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한 경우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활동이 제한된다.</u> 1. 출전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체육회 및 관계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2.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3.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없다.	<b>제36조(징계의 효력 등)</b> ① 연맹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징계혐의자가 그 즉시 징계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한 경우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②~③ “생략” <u>&lt;신설&gt;</u>	<b>제36조(징계의 효력 등)</b> ① 연맹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징계혐의자가 그 즉시 징계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한 경우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활동이 제한된다.</u> 1. 출전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연맹 및 관계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2.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3.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없다.
<b>제38조(징계의 보고)</b> 제33조에 따라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은 지체 없이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u>시·도종목단체 및 시·군·구체육회 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위원회가 보고한다.</u>	<b>제38조(징계의 보고)</b> 제22조에 따른 연맹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징계 의결한 사항은 지체 없이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b>제38조(징계의 보고)</b> 제2233조에 따른 연맹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은 지체 없이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u>하며, 시·도연맹 및 시·군·구연맹 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위원회가 보고한다.</u>
<b>제39조(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b> ① 체육회에 <u>신고</u> 접수된 권익침해(폭력, <del>성폭력</del> . <u>성추행</u> . <u>성희롱</u> ) 사안에 대하여 체육회는 1차 조사·구제 기관인 <u>회원종목단체</u> 또는 <u>회원시·도체육회</u> 에 이를 즉시 이송하여 <u>3</u> 개월 내에 처리하게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b>제39조(선수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b> ① 체육회에 <u>신고</u> 접수된 권익침해(폭력. <del>성폭력</del> 등) 사안에 대하여 체육회는 1차 조사·구제 기관인 <u>연맹위원회</u> 또는 <u>시·도위원회</u> 에 이를 즉시 이송하여 <u>6</u> 개월내에 처리하게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b>제39조(선수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b> ① 체육회에 <u>신고</u> 접수된 권익침해(폭력, <del>성폭력</del> 등 <u>성폭력</u> . <u>성추행</u> . <u>성희롱</u> ) 사안에 대하여 체육회는 1차 조사·구제 기관인 <u>연맹위원회</u> 본 <u>연맹</u> 또는 <u>시·도위원회</u> <u>시·도연맹</u> 에 이를 즉시 이송하여 <u>6</u> <u>3</u> 개월내에 처리하게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체육회 지침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22.1.21. 현행)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p>기관은 <u>다음 각 호에 따른다.</u></p> <p>1. <u>회원종목단체</u>는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등이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p> <p>2. <u>회원시·도체육회</u>는 해당 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제외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p> <p>④ 체육회에 <u>신고</u> 접수된 권익 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회원종목단체와 <u>회원시·도체육회</u>는 체육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u>신고</u> 접수된 사안, 동 단체 위원회가 권한으로 조사키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 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즉시 송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징계일 현재 지도자·선수 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별표 1의 <u>위반행위 제6호부터 제9호까지</u>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도자·선수 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p> <p>⑧ “현행과 같음”</p> <p>⑨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 체육회, 징계혐의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u>회원시·도체육회</u>, 시·도교육청 및 피해자(선수 권익 침해 경우)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p> <p>⑩ “현행과 같음”</p>	<p>기관은 <u>아래와 같이 결정한다.</u></p> <p>1. <u>연맹위원회</u>는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등이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p> <p>2. <u>사도위원회</u>는 해당 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제외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p> <p>④ 연맹에 <u>신고</u> 접수된 권익 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연맹은 본 연맹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u>신고</u> 접수된 사안, 동 단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키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 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즉시 송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⑥ “생략”</p> <p>⑦ 징계일 현재 지도자·선수 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별표 1의 <u>제2항(개별기준)의 ‘마’, ‘바’, ‘사’ 아호</u>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도자·선수 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p> <p>⑧ “생략”</p> <p>⑨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 체육회, 징계혐의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및 피해자(선수 권익침해 경우)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p> <p>⑩ “생략”</p>	<p>기관은 <u>아래와 같이 결정한다.</u> <u>다음 각 호에 따른다.</u></p> <p>1. <u>연맹위원회는연맹은</u>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등이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p> <p>2. <u>사도위원회는시·도연맹은</u> 해당 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제외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p> <p>④ 연맹에 <u>신고</u> 접수된 권익 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연맹은 본 연맹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u>신고</u> 접수된 사안, 동 단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키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 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즉시 송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징계일 현재 지도자·선수 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별표 1의 <u>제2항(개별기준)의 ‘마’, ‘바’, ‘사’ 아호위반행위 제6호부터 제9호까지</u>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도자·선수 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p> <p>⑧ “현행과 같음”</p> <p>⑨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 체육회, 징계혐의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u>회원시·도체육회</u>, 시·도교육청 및 피해자(선수 권익침해 경우)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p> <p>⑩ “현행과 같음”</p>

체육회 지침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22.1.21. 현행)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b>제6장 보칙</b>	<b>제6장 보칙</b>	<b>제6장 보칙</b>
<b>제40조(개인정보의 처리)</b> ① "현행과 같음" ②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u>회원</u> 시·도체육회는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또는 제3자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b>제40조(개인정보의 처리)</b> ① "생략" ② <u>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u>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또는 제3자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b>제40조(개인정보의 처리)</b> ① "현행과 같음" ② <u>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체육회, 본 연맹 및 시도연맹은</u>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또는 제3자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b>제40조의2(징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b> ① "현행과 같음" ②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u>회원</u> 시·도체육회는 각 위원회의 견책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징계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b>제40조의2(징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b> ①~② "생략"	<b>제40조의2(징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b> ①~② "현행과 같음"
<b>제42조(회의의 공개)</b> 위원회의 <u>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u> ,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b>제42조(회의의 비공개)</b>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b>제42조(회의의 비공개)</b> 위원회의 <u>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u> ,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b>제43조(규정 제·개정)</b> ① 회원종목단체 및 <u>회원</u> 시·도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의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및 <u>회원</u> 시·도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이하 생략) 1~3. "현행과 같음"	<b>제43조(규정 제·개정)</b> ①~② "생략"	<b>제43조(규정 제·개정)</b> ①~② "현행과 같음"
<b>제44조(신고·증언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b> ① 누구든지 징계사건과 관련한 <u>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 또는 증인이 징계사건에 대하여 진술·증언 및 자료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신고자 또는 증인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속단체에	<신설>	<b>제44조(신고·증언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b> ① 누구든지 징계사건과 관련한 <u>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 또는 증인이 징계사건에 대하여 진술·증언 및 자료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신고자 또는 증인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속단체에

체육회 지침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22.1.21. 현행)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p>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불이익을 내린 자에 대한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③ 체육회 및 관계단체는 신고자 또는 증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등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신고자 또는 증인을 위하여 징계 처리와 관련된 절차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p> <p>④ 징계절차에 있는 자가 해당 사건의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보복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징계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징계를 내려야 한다.</p>		<p>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불이익을 내린 자에 대한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③ 연맹 및 관계단체는 신고자 또는 증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등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신고자 또는 증인을 위하여 징계 처리와 관련된 절차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p> <p>④ 징계절차에 있는 자가 해당 사건의 신고자 또는 증인에게 보복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징계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징계를 내려야 한다.</p>
<p><b>부 칙(2022. 0. 0.)</b>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칙 경과규정) 이 규정 2018년 10월 4일에 시행된 부칙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는 2018년 10월 4일 이전에 발생한 혐의에도 적용한다.</p>	<p>&lt;신설&gt;</p>	<p><b>부 칙(2022. 0. 0.)</b>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칙 경과규정) 이 규정 2018년 10월 4일에 시행된 부칙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는 2018년 10월 4일 이전에 발생한 혐의에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022.1.21. 현행)</b></p>	<p style="text-align: center;"><b>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b></p>																
<p><b>[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1조제2항 관련)</b>  <b>1. 일반기준</b>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극히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2)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3)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4) 단, “2.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시 아래 위반행위별 ‘주요 혐의내용(예시)’은 “중대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40 1032 751 1895"> <thead> <tr> <th>위반행위</th> <th>주요 혐의내용(예시)</th> </tr> </thead> <tbody> <tr> <td>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td> <td>혐의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td> </tr> <tr> <td>다. 승부조작, 편파판정</td> <td>심판매수(공여 및 수수)를 통하여 승부조작, 편파판정을 한 경우 등</td> </tr> <tr> <td>마. 폭력</td> <td>운동용기구를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운동용기구가 아닌 위험한 물건(홍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경미한 경우라도 2회 이상 폭행한 경우, 직무 정지기간 중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td> </tr> <tr> <td>사. 성추행 등 행위</td> <td>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사진이나 동영상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유포한 경우 포함)</td> </tr> <tr> <td>아. 성희롱 등 행위</td> <td>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개인의 성적 정보를 의사에 반하여 유출·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td> </tr> <tr> <td>차.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td> <td>계획적 또는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등</td> </tr> <tr> <td>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td> <td>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td> </tr> </tbody> </table> <p>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p>	위반행위	주요 혐의내용(예시)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혐의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심판매수(공여 및 수수)를 통하여 승부조작, 편파판정을 한 경우 등	마. 폭력	운동용기구를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운동용기구가 아닌 위험한 물건(홍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경미한 경우라도 2회 이상 폭행한 경우, 직무 정지기간 중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	사. 성추행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사진이나 동영상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유포한 경우 포함)	아. 성희롱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개인의 성적 정보를 의사에 반하여 유출·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차.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계획적 또는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등	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p><b>[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1조제2항 관련)</b>  <b>1. &lt;삭제&gt;</b></p>
위반행위	주요 혐의내용(예시)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혐의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심판매수(공여 및 수수)를 통하여 승부조작, 편파판정을 한 경우 등																
마. 폭력	운동용기구를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운동용기구가 아닌 위험한 물건(홍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경미한 경우라도 2회 이상 폭행한 경우, 직무 정지기간 중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																
사. 성추행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사진이나 동영상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유포한 경우 포함)																
아. 성희롱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개인의 성적 정보를 의사에 반하여 유출·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차.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계획적 또는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등																
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혐의내용  
혐의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위반 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나.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1.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징계 대상	징계기준		
현행과 같음	①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금품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증뢰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등)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② 2년 이상 장기간수수요약속한 경우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뇌물을 받은 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등)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2.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횡령·배임

징계대상	징계기준		
현행과 같음	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혐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② 혐의수익을 은닉한 경우	혐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혐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⑤ 혐의수익의 대부분을 단체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혐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⑥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3.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인사권 남용 및 채용 비리 사건, 각종 규정 위반행위, 지도자 임장(현장)지도 의무 위반 등 포함)

징계 대상	징계기준		
현행과 같음	권한남용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권한남용 행위의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견책, 1년 이하의

징계 대상	징계기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직무태만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무형의 이득을 취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태만 행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기타 단체 및 대회 운영 비위 사건(위반행위 1의 금품수수, 2의 횡령·배임, 3의 권한남용 및 직무태만 제외)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위반 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영구제명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혐의내용  
심판매수(공여 및 수수)를 통하여 승부조작, 편파판정을 한 경우 등

#### 4. 승부조작, 편파판정(경기 내용 및 결과를 조작하거나,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로 일방에게 유리한 판정 등을 한 경우)

징계 대상	징계기준	
현행과 같음	① 승부조작과 편파판정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② 1백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제명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행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승부조작과 편파판정 행위 발각 이전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⑤ 협박 등의 강요에 의하여 행위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위반 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라. 체육 관련 입학 비리1)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운동부2)	.영구제명  .대회 출전정지(전국규모 토너먼트 또는 전국규모 리그 1개 대회)

#### 5. 체육 관련 입학비리

징계 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입학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기록 내지 기록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 ② ①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③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선수, 학부모, 소속학교, 지도자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하는 등의 행위 ④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제명
	①~④의 경우를 방조하는 행위,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운동 경기부	①~④의 행위를 한 경우	1년 미만의 출전정지

위반 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마. 폭력3)	지도자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 6. 폭력

위반 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경우4): 1년 미만의 자격정지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영구제명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혐의내용

운동용기구를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운동용기구가 아닌 위험한 물건(흥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경미한 경우라도 2회 이상 폭행한 경우, 직무 정지기간 중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

징계 대상	징계기준	
현행과 같음	① 흥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직무 정지기간 중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외 매우 비난할 만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제명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② 폭력 행위가 치료기간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③ 폭력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언어폭력(욕설, 비속어, 조롱, 공격적인 언어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해 모욕, 위협,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극적 표현)	언어폭력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위반 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지도자 선수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영구제명

7. 성폭력(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중 매우 중대한 경우 포함)

징계 대상	징계기준	
현행과 같음	①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행위 ②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③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범행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④ 다수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⑥ 반복적인 경우 ⑦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경우 ⑧ 비난 동기가 중대한 경우(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추행한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제명
	①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행위 ②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③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범행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④ 다수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⑥ 반복적인 경우 ⑦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경우 ⑧ 비난 동기가 중대한 경우(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추행한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제명

위반 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사. 성추행 등 행위5)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영구제명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혐의내용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사진이나 동영상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유포한 경우 포함)

8. 성추행 등 행위("7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 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현행과 같음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의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성추행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추행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위반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아. 성희롱 등 행위5)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4): 1년 미만의 자격정지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9. 성희롱 등 행위("7항", "8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 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현행과	성범죄 구성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1년 이상 3년

위반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선수관리담당자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혐의내용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개인의 성적 정보를  
의사에 반하여 유출·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징계 대상	징계기준		
같은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않는 성희롱 등의 경우 성희롱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희롱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하의 자격정지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위반 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자.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수업권 등)	지도자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
	선수관리담당자	출전정지 1개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
	선수	자격정지 2년 이하

### 10. 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학습권 등)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침해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선수관리담당자	침해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위반 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차. 선수에 대한 괴롭힘(“자”항 외 인권 침해사항)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의 자격정지

### 11. 괴롭힘(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현행과 같은	괴롭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괴롭힘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위반 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카.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지도자 선수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 12.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 1)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위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3) 위 “1)~2)”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제명
	② 지위 또는 그 지위에 따른 권한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고의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이 외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혐의내용  
계획적(또는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등

위반 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타. 음주운전, 음주소란	지도자 선수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 13.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위반 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행위(강화 훈련 기간중)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8: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징계 대상	징계기준		
현행과 같음	음주운전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명
		②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음주 소란행위	음주소란 행위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음주소란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음주소란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위반 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파. 불법도박9)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 14. 불법도박

징계 대상	징계기준		
현행과 같음	불법베팅	불법적으로 스포츠 대상 베팅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제명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사이트에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베팅에 참여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구매, 알선, 방조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불법베팅 외 불법도박	불법도박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불법도박 행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위반 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지도자 선수 심판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15.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제1항부터 제14항에 준하는 비위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	------

위반 행위	징계 대상	징계기준	징계대상	징계기준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현행과 같음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혐의내용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② 과실로 인한 행위 등 혐의가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p>주1) 입학비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p> <p>① 입학관련 기록 내지 기재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p> <p>②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학생·선수·학부모·소속 학교·지도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방조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p> <p>③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p> <p>주2) 운동부란 체육관련 입학비리에 연루된 선수·지도자가 소속된 해당 종목의 대학교 운동부를 말한다.</p> <p>주3) 피해자가 제2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행위 “파”를 적용한다.</p> <p>주4) “마. 폭력”, “아. 성희롱 등 행위” 중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는 언어적 혐의로서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순 언어폭력 및 언어적 성희롱에 한하여 적용한다.</p> <p>주5) 성추행과 성희롱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추행: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사진·동영상 촬영 행위 포함)</li> <li>- 성희롱: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li> </ul> <p>주6)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우위 등을 이용하여 선수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p> <p>주7) 음주운전의 ‘경미한 경우’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음주측정 불응 등을 말한다.</p> <p>주8) 음주운전의 ‘중대한 경우’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와 인적·물적 피해 유발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을 말한다.</p> <p>주9)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등 개설의 경우를 포함한다.</p>			<삭제>		
<p>[별표 2]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31조제3항 관련)</p> <p>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p>			<p>[별표 2]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31조제3항 관련)</p> <p>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p>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b>과실 및</b>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다.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 (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 이상
2. 지도자, 선수관리담당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지시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b>사람(교사)</b>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사.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6개월 이상(손해배상 병과)
	아.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 (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이상
3.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마.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3개월 이상(손해배상 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 (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1년이상	
4. 기타 임원 (참가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b>과실 및</b>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다.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 이상
2. 지도자, 선수관리담당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지시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b>경우</b>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사.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6개월 이상(손해배상 병과)
	아.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 (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이상
3.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마.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3개월 이상(손해배상 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 (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1년이상	
4. 기타 임원 (참가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마. 시설 및 기물파괴	자격정지 1년 이상 (손해배상 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 (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6개월 이하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마. 시설 및 기물파괴	자격정지 1년 이상 (손해배상 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6개월 이하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별표 3] "생략"**

<신설>

**[별표 3] "현행과 같음"**

**[별표 4] 징계의 감경기준(제32조제1항 관련)**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	제32조제1항에 따라 감경 가능한 징계
제명	자격정지 (자격정지 5년 이상 10년 이하)
해임	자격정지 (자격정지 3년 이상 7년 이하)
자격정지	자격정지 (확정된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출전정지	출전정지 (확정된 출전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견책	불문

[ 별 첨 2 ]

의결 안건	안건번호	의결일자	제안근거	제안부서	비고
	제2차 이사회 (의결 - 제5호)	2022.4.27.	연맹정관 제4장 제14조 2항 7호에 의함	총무부	

■ 포상금 변경(안)

○ 메달획득 경기력향상비

구 분		현재		변경(안)		비고
		선 수	지도코치	선 수	지도코치	
올림픽경기대회	금메달	1억원	5천만원	2억원	1억원	
	은메달	5천만원	2천 5백만원	1억원	5천만원	
	동메달	2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	2천 5백만원	
	4위	1천만원	5백만원	3천만원	1천5백만원	
	5위					
	6위	5백만원	2백 5십만원	1천만원	5백만원	
	7-8위					
세계선수권대회 실외 (실내)	금메달	1억원 (-)	5천만원 (-)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천5백만원)	
	은메달	5천만원 (-)	2천 5백만원 (-)	5천만원 (2천5백만원)	2천 5백만원 (1천2백5십만원)	
	동메달	2천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5백만원)	
	4위	1천만원 (-)	5백만원 (-)	1천만원 (-)	5백만원 (-)	
	5위					
	6위	5백만원 (-)	2백 5십만원 (-)	5백만원 (-)	2백 5십만원 (-)	
	7-8위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주니어선수권 유니버시아드대회	금메달	2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5백만원) 1천만원	
	은메달	1천만원	5백만원	좌동	좌동	
	동메달	5백만원	2백 5십만원	좌동	좌동	
아시아선수권대회	금메달	5백만원	2백 5십만원	1천5백만원	7백5십만원	
	은메달	2백만원	1백만원	5백만원	2백5십만원	
	동메달	1백만원	5십만원	1백만원	5십만원	
2023예천아시아 U20선수권대회	금메달	-	-	5백만원	2백 5십만원	2023년 한시적운영
	은메달	-	-	2백만원	1백만원	
	동메달	-	-	1백만원	5십만원	

○ 기록경신 경기력향상비

구 분		현재		변경(안)		세계연맹포인트점수	비고
		선수	지도코치	선수	지도코치		
한국 신기록	골드	2 천만원	2 천만원	좌동	좌동	1200점 이상	세계연맹 기록에 대한 랭킹포인트 점수를 근거로 기준 설정함
	A	1 천만원	1 천만원	좌동	좌동	1199점~1150점	
	B	5 백만원	5 백만원	좌동	좌동	1149점~1100점	
	C	3 백만원	3 백만원	좌동	좌동	1100점 미만	
아시아신기록		2 천만원	1 천만원	3 천만원	1천5백만원	상향조정	
세계신기록		1 억원	5 천만원	좌동	좌동		
부별한국 기록 (초.중.고.대. 일)	트랙.필드. 경보			2백만원	1백만원	한시적운영 (현 집행부 임기까지) 대한육상연맹 주최대회	
	마라톤 (풀코스) 경보 (35Km)	-	-	5백만원	1백만원		
국제대회 본인PB경신 대.일반부/(중.고등부)		-	-	1백만원	-		
남자 100m (9초99이내)				2억원	1억원		
릴레이종목결승진출 (실외세계선수권/올림픽)				1억원	5천만원		
믹스릴레이				4백만원	1백만원		

※ 조치사항 : 진행사항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사무처에 위임 처리함